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36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문진석 · 박용갑 · 박상혁
허영 · 조인철 · 김기표
김주영 · 박정현 · 이주희
박정 · 김윤 · 전용기
김교홍 · 최혁진 · 복기왕
이춘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2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u><신 설></u></p> <p>1. (생략)</p> <p>2. ~ 4.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8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u>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u></p> <p><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